

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

검 토 보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재주 의원 등 8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3. 제안이유

○ 충청북도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발굴·조사·연구하고, 체계적인 수집·보존 활동을 통해 향토 자료의 학술가치를 창출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,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향토사 연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.
- 향토사 진흥 시책 추진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.
- 향토사 연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및 지원을 규정함(안 제4조 및 제5조).
- 향토사 연구자료 수집 방법 및 교육·홍보를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.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인물, 지리, 문화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를 향토사로 정의하고, 이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관한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5호는 “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”과 관련하여 “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”을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예시로 열거하고 있고,
 - 같은 법 제28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,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【참고】

- 2개 시·도에서 유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
 - ▶ 「울산광역시 역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」(2022. 12. 29. 제정)
 - ▶ 「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2024. 4. 5. 제정)

나. 주요 조문의 검토

- ‘안 제2조’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한 것으로, “향토사”와 “향토지”에 관하여 규정함.
 - 제1호는 “향토사”를 충청북도의 인물, 지리, 문화유산 등 지역고유의 역사”로 정의하고 있고, 제2호는 “향토지”를 “향토사 및 지리와 문화, 민속 등을 조사·연구하여 기록한 책”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,

- 지리, 문화 등의 단어가 중복되어 의미가 불분명한 측면을 고려하여, "향토지"의 정의를 "지역고유의 역사, 지리, 문화 및 민속 등을 조사·연구하여 기록한 책"으로 정의를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향토사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향토사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,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또한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3항제5호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고려할 때,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.